

발 간 사

최근 우리 경제가 전반적으로 매우 어렵다. 물가, 환율, 고용 등 여러 측면에서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다. 지난해 말 발표된 IMF협약은 우리 경제 전반에 대해 많은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금융, 재정, 무역, 노동, 재벌 등 우리나라 경제전반의 구조개혁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들 협약안의 내용은 그 하나 하나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매우 크고 또 국민의 부담으로 귀결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정책사안이 아닐 수 없다.

IMF협약안은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시키는 방안 등 기업경영의 일대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결합채무제표의 도입과 상호채무보증의 해소는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와 관련하여 초미의 정책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본원은 『결합채무제표의 도입방안』과 『상호채무보증제도의 개편방안』에 대한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사계의 전문가를 모시고 기업경영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다. 본 보고서는 이들의 발표자료와 종합토론 내용을 엮어 한권의 책으로 내놓는 것이다.

금번 기업경영투명성 제고를 위한 토론회가 결합채무제표와 상호지급보증제도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일조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본 세미나의 주제발표를 해주신 산동회계법인의 최창순 대표이사과 본원의 이재우 박사와 이병기 박사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토론에 참가하여 주신 사계의 전문가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다만 본 보고서의 내용은 필자들의 개인적인 견해를 반영하는 것으로서 한국경제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와는 다를 수 있음을 밝혀 둔다.

1998년 2월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좌 승 희

結合財務諸表 導入方案

崔 昌 淳

(産棟會計法人 代表理事)

1.	-----	3
(1)	-----	3
(2)	-----	3
(3)	-----	4
2.	-----	5
(1)	-----	5
(2)	-----	6
(3)	-----	9
(4)	-----	10
(5)	-----	11
3.	-----	12
(1)	-----	12
(2)	-----	14
(3)	-----	15
(4)	-----	15
(5)	-----	16
(6)	-----	17
(7)	-----	18
4.	-----	19
(1)	-----	19
(2)	-----	19
5.	-----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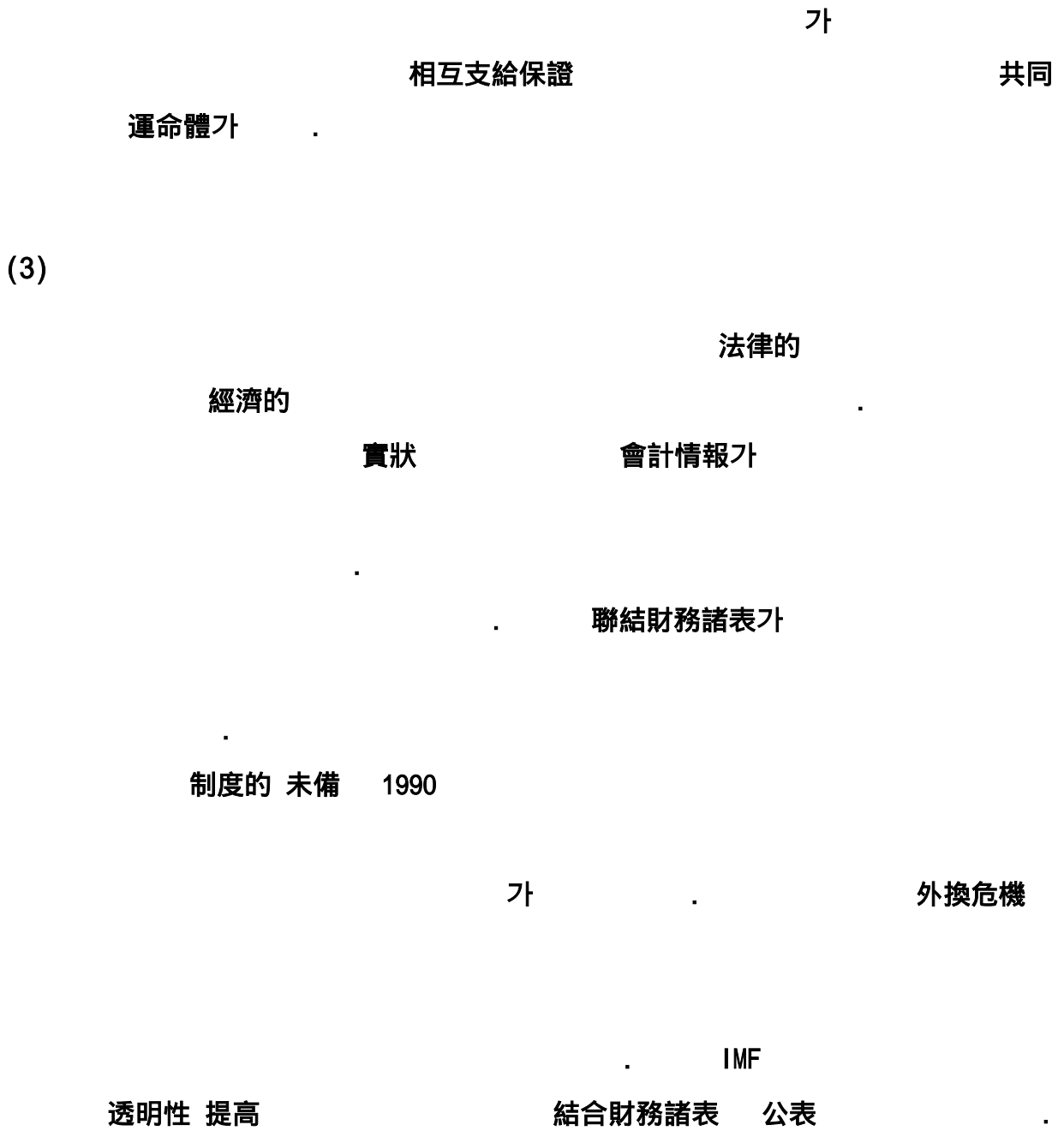
1.

(1)

經濟現
 象 .
 가 . 不渡가
 가 連鎖不渡 .
 가 企業集團(財閥) 系列
 會社 法定管理 和
 議申請 가
 가 ,
 特殊 支配構造 無關

(2)

成長環境 經營方式 .
 支配構造面 特徵 .
 가 가 個人大株主 家族(
) 集中 .
 所有 經營 分離 가 .
 內部 持分率) 上意下達 .
 統合 (가
 가 意思決定
 機關(:) 任免
 兼任
 經濟的 單位 .



2.

(1)

聯結財務諸表(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가

1976 22 . 上場會社가

1992

6 , 監査對象會社

1994 4

歴史가 가

. 가

財務狀態 經營成果 가 .

1 4

가 가

除外

, B 가 16

16 79 36

54.4% 43

가 .

1

4

(1996. 12. 31)

						(%)
A	55	9	19	28	27	49.1
B	79	16	20	36	43	54.4
C	54	9	19	28	11	35.5
D	31	7	13	20	11	35.5
	219	41	71	112	107	48.8

:

(2)

가

가.

聯結對象 判定基準

理論

가 .

持分率基準 (equity ratio concept)

가

持分比率

. ,

가

,

物量的

가

가 .

支配力基準 (managerial control concept)

外形的 形式 .

, 60%

, 30%

高度 分散

外形的 物量的

實質的 支配力

가

實質支配類型

2 가 가

가

株

式會社

外部監査

法律施行令

(1 3)

가

1

()

()

가

100 50

가

100 30

1

2

(

)가

가

100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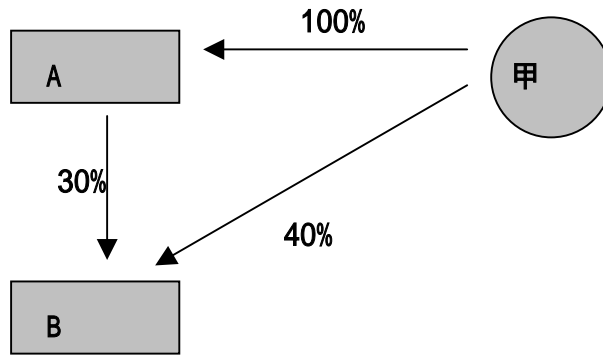
1 持分率基準 , 2 支配力基準 . 3

2

30% 條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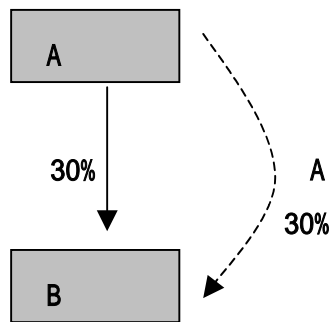
1 1 A 가 B 30%
 , A 100% 甲 B 40%
 A B 財務・人事 A
 B

1 1



2 2 A 가 B 30%
 30% A 가 B , 가
 A B

2 2



縮小 規定

가 ,
가 矛盾
1994 削除
後退 , 促進
가 .

(3)

EC 가 ,
計基準委員會(Financial Accounting Standard Board)가 財務會
廢棄
導入 1995 10 16
(Exposure Draft No. 154-D).
가 .

法的支配(legal control) 50% , 事實上支配
(effective control)

a. (40%)
(significant interest)

b.

c.

가

d. 가 , , ;

()

가 (

)

e. , 가

,

f.

,

,

金融業種會社

.

(4)

30% 出資持分率 , 實
質的 가

.

,

),

, , ,

(

,

,

重複行事

.

問題點 解消

1998 1 8

(“ 外監法”)

(5)

外監法 2 14 1

備置・公示 , 2

2000 1 1

12

2001

, 1999

準備が

完了

導入時期

2000

1

1999

早期導入

1998

再改正

制定

完備

3.

(1)

實體把握 가 .

代案

가 .

結合財務諸表(combined financial statements)

가 1959

會計研究公報(Accounting Research Bulletin ; ARB)

51

“

가

()가

가

가

(common management)

.”

實質的 支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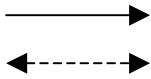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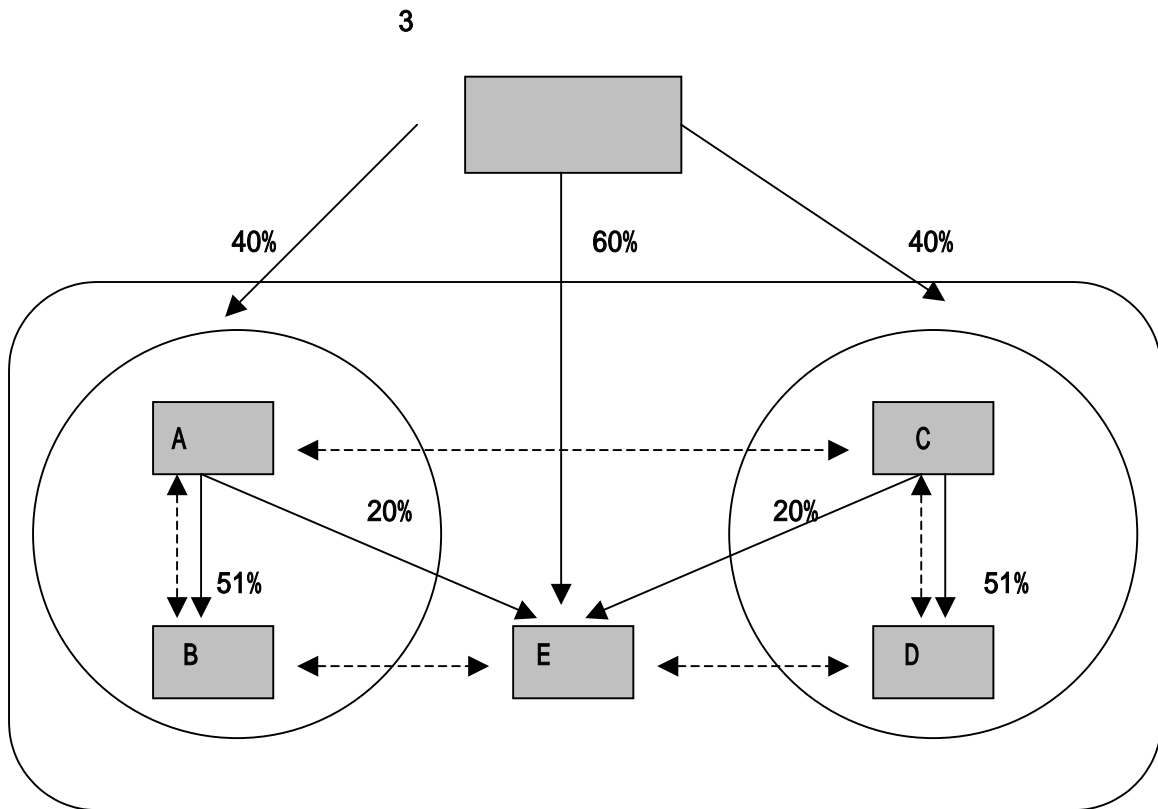
單一經濟的 實體

가

가

作成主體 決定困難

3 가 2 (A B , C D), A,B,C,D,E 가



(2)

ARB No.51

作成方法

“
가
가
.”

基本的 差異点

2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ul style="list-style-type: none">()
	<ul style="list-style-type: none">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ul style="list-style-type: none">	<ul style="list-style-type: none">
	<ul style="list-style-type: none">50%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ul style="list-style-type: none">	<ul style="list-style-type: none">

(3)

가 가

外監法 1 3 2 證券先物委員會가

資産總金額

(:1), 資産總額順位

(:50), 與信總額

(:5), 所屬系列會社數

(:10), 가 가

가 가

가 二重要件基準 (;

1 가 5)

(4)

外監法 1 3 3 證券先物委員會

選定

申告

作成主體 가

가 가

任意的 決定

大會社가 最上位 支配會社 最

(owner)가

(,)가

主力會社가

가

強制規定 가

(5)

外監法 1 2 3

, 1 3

1 2()

3. (“ ”)

2 2 (“ ”

)

結合對象範圍 決定

難題

가 代案 想定

經營政策支配 與信

提供支配

가

獨占禁止

公正去來

法律

海外系列會社

가

垂直的

水平的

가

海外系列會社

包含猶豫

가 (;2 3)

(6)

相互出資持分
 相計，相互債權 債務 相計，內部損益去來 相計，內部未實現 損益 除
 去，外部株主持分 區分計算

支配株主持分 外部株主持分
 兩論
 ()

()
 合算

經濟的 實體概念

가 金融會社
 ()

業種

別 部門情報(segment information)

註釋

가 가

持分法(equity method)

(7)

決算日

가

가 .

公示 期限

4

(7 1),

1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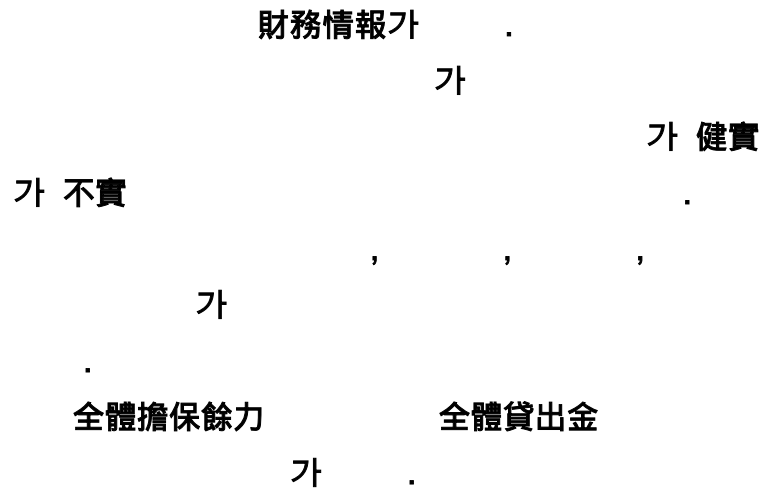
監査報告書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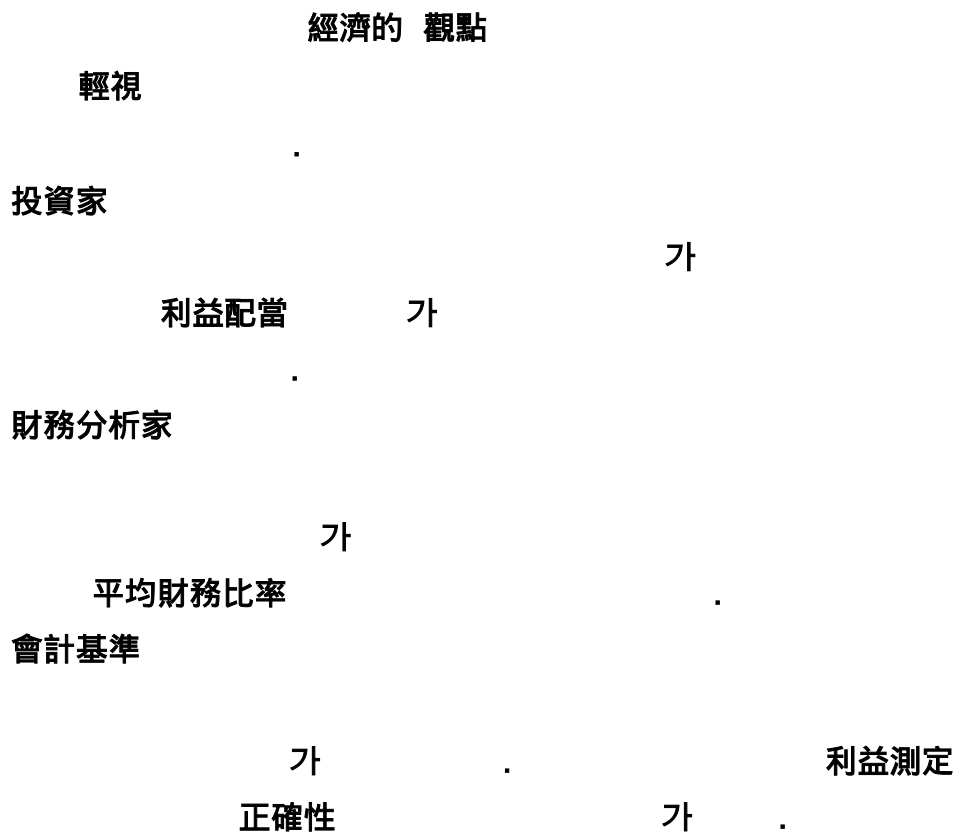
가

4.

(1)



(2)



5.

相互支給保證，
 與
 過半數 株式所有
 持分所有 經營參
 個別財務諸表
 가
 가
 聯結財務諸表
 結合財務諸表
 作成 企業集團 範圍
 結合對象 系列會社 範圍
 가
 貢獻
 經營透明性
 가
 受容態勢
 意見收斂
 混亂 施行錯誤가 最小化

相互債務保證制度의 改善方案

李栽雨 研究委員
李丙基 前任研究員
(韓國經濟研究院)

<목 차>

1. 문제의 제기	23
2. 채무보증제도의 현황	24
(1) 제도	24
(2) 채무보증 현황	25
3. IMF합의와 채무보증제도의 전망	27
(1) IMF와의 합의 내용	27
(2) 정부가 검토중인 채무보증 대책	28
4. 문제점과 향후 전망	29
(1) 채무보증 규제의 본질적 문제	29
(2) 채무보증 감축에 따른 영향	30
5. 채무보증 규제의 바람직한 방향	34
(1) 채무보증규제의 법적 근거	34
(2) 신용대출 정착을 위한 금융감독의 강화	34
(3) 채무구조에 따른 보증한도의 차등화	35
(4) 채무보증에 대한 투명성 제고	35
(5) 보증 미해소에 대한 과징금 부과	35
(6) 非차입성 보증은 현행대로 유지	36
6. 보증해소를 위한 관련제도 보완	37

1. 문제의 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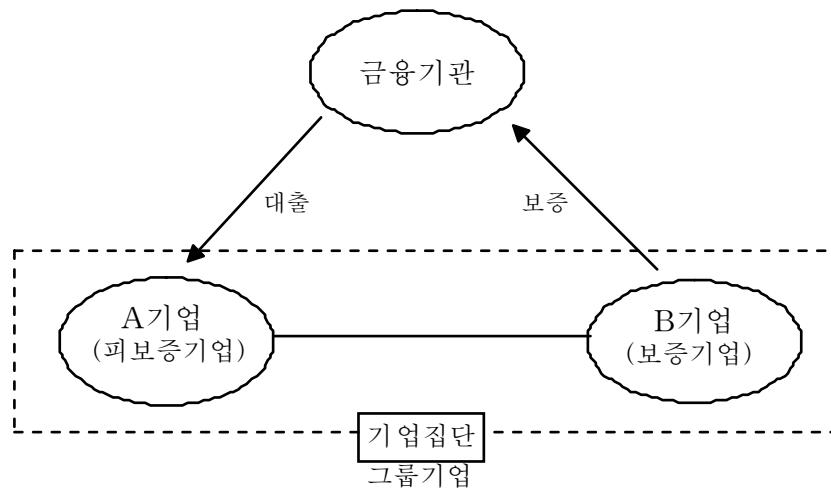
- IMF합의이후 자본 및 실물시장 개방이 가속화되면서, 경쟁과 시장원리에 입각한 경제운용이 강조되는 등 경제운용의 패러다임이 대전환을 맞이하고 있음.
- IMF의 지적처럼 우리 경제는 그 동안 차입에 의존하여 무리한 투자가 이루어졌으며, 이를 효과적으로 감시, 제어할 수 있는 기업지배구조 및 금융시장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음.
- 특히 상호채무보증제도는 대기업들이 차입을 확대하는 지렛대(leverage)로 활용되어 왔다는 인식하에, 이른바 재벌개혁의 주요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음.
- 그러나 상호채무보증은 財閥慣行일 수도 있으나 보다 본질적으로는 신용대출이 정착되지 못해서 발생하는 金融慣行의 문제이며, 그런 차원에서 채무보증제도는 공정거래법에 의한 규제보다는 금융제도개혁과 관행의 개선으로 자연스럽게 개선을 유도하는 것이 원칙임.
- 특히 현재와 같은 금융경색 국면에서 단기간내에 채무보증을 해소하도록 하는 방안은 자금난을 악화시킬 수 있어 정상적인 기업구조조정 자체를 어렵게 할 수도 있음.
- 따라서 채무보증의 축소는 IMF의 권고대로 원칙적으로 이행하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2. 채무보증제도의 현황

(1) 제도

- 기업집단에 소속하는 회사는 국내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금액의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100%를 넘어서는 안되도록 규제하고 있음. 다만 아래처럼 비차입성 채무보증은 규제하지 않고 있음.
- 공업발전법 또는 조세감면 규제법에 의한 합리화계획 또는 합리화기준에 따라 인수되는 회사의 채무와 관련하여 행하는 보증
-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채무에 대한 보증

<그림 1> 채무보증의 계약관계



- 정부는 '93년 제도도입 당시 자기자본의 200%까지 채무보증 규모를 제한하던 것을 '97년 공정거래법 개정시에 100%로 한도를 인하하여 '98년 3월말까지 기업들이 초과분을 해소토록 함.

(2) 채무보증 현황

- 채무보증 규제로 인해 채무보증 비율은 꾸준히 낮아지고 있는 추세임.
- 채무보증에 대한 규제에 따라 30대 기업집단의 채무보증비율은 '93년 이후 꾸준히 하락하는 추세임.

<표 1> 기업집단의 채무보증 추이

(단위: 조원, %)

	자기자본 (A)	채무보증금액			자기자본대비율(%)	
		계(B=C+D)	제한대상(C)	제외대상(D)	B/A	C/A
93.4.1	35.2	165.5	120.6	44.9	469.8	342.4
94.4.1	42.8	110.7	72.5	38.2	258.1	169.3
95.4.1	50.7	82.1	48.3	33.8	161.9	95.2
96.4.1	62.9	67.5	35.2	32.3	107.3	55.9
97.4.1	70.5	64.4	33.1	31.2	91.3	47.0

자료: 공정위

- 하위그룹일수록 채무보증비율이 높아 채무보증 제한이 더욱 부담
- 자기자본대비 100%초과 보증금액과 대상기업의 비중이 하위그룹일수록 더 높은 실정임.

<표 2> 기업집단의 채무보증 규모

(단위: 10억원)

구 분	100% 초과보증액	100%초과 보증기업(개)	보증총액
5대	829	19	11,696
6-10대	1,167	15	7,452
11-30대	4,681	46	13,999
30대 전체	6,678	80	33,147

자료:공정위

- 채무보증 규모를 살펴보면 은행여신이 줄고 최근 들어 상대적으로 제2금융권의 여신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임.

<표 3> 기업집단의 채무보증을 통한 여신

(단위: 조원)

	은 행	제2금융권	합 계
1993.4.1	62.0	37.8	99.7
1996.4.1	27.8	11.4	39.2
1997.4.1	19.9	13.2	33.1

자료: 공정위

- 채무보증제한에서 예외인 채무보증은 약 31조원 수준이며, 산업합리화를 위한 보증이 11조원으로 가장 많으며, 해외수출관련 보증, 기술개발 관련 보증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음.

<표 4>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구성

(단위: 조원)

	산 업 합리화	해외지점 여 신	수 출 입 은행지원	해외건설 관련보증	기술개발	D/A, D/P 로칼L/C	합 계
1993	16.1	4.7	2.1	13.5	0.6	7.9	44.8
1996	12.1	3.8	2.5	8.2	0.2	5.5	32.3
1997	11.0	4.1	3.5	8.1	4.5	0.2	31.1

자료 : 공정위

3. IMF합의와 채무보증제도의 전망

(1) IMF와의 합의 내용

- 국제통화기금(IMF)의 자금지원이후 정부는 기업의 상호채무보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조치를 포함한 기업채무구조 개선안을 마련할 것을 약속함.
 - “국제적, 지역적 다자간 금융기구의 도움을 받아 기업채무구조를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개편안을 마련한다. 채무구조 개편안에는 기업의 높은 부채-자본비율을 낮추고, 기업자금조달의 은행차입비중을 축소하고, 재벌내 계열사간 상호채무보증 관행을 변화시킬 수 있는 조치들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Memorandum on the Economic Program, 37조)
- 그러나 IMF는 결합채무제표의 작성을 통해 상호채무보증의 투명성을 제고할 것을 권고하고 있을 뿐 상호채무보증의 전면 해소는 언급하지 않음.
 - “자본시장의 매력을 증진시키려면, 기업인수합병(M&A)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되고, 국제적인 회계기준에 따라 상장회사들의 회계기준도 도입돼야 한다. 상장회사들은 독립된 외부 감사인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연결채무제표의 작성, 기업공시를 철저히 해야 한다. (중략) 더구나 금융부채를 증가시켜 온 재벌 계열사간 상호채무보증은 결합채무제표를 도입함으로써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 시장규율을 회복시키고 도적적 해이(moral hazard)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한국의 파산관련 법률이 정부의 간섭없이 작동돼야 한다. 정부는 특정 개별기업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각종 지원과 세제 혜택을 주던 기존의 정책을 폐지하고, 건전한 기업과 불건전한 기업을 강제로 합병시키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IMF이사회 제출보고서).

(2) 정부가 검토중인 채무보증 대책

- 정부는 상호채무보증제도의 해소 시기를 단축하고, 규제 대상을 더욱 확대하는 방향으로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채무보증 해소시기를 1999년까지 단축하는 방안(해소시점을 2000년이 후에서 기간을 단축)
 - 규제 대상 기업을 50대 기업집단, 혹은 모든 기업에 상호채무보증을 금지하는 방안(현행 30대 기업집단만 규제)
 - '98년 4.1이후 100% 초과보증분에 대한 벌칙성이자 5%를 부과하고, 2000년 4.1이후에는 100%를 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로 3% 벌칙성 이자를 부과하는 방안
 - 예외대상 채무보증을 수출 및 기술개발관련 보증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축소하는 방안

4. 문제점과 향후 전망

(1) 채무보증 규제의 본질적 문제

- 채무보증은 大企業慣行일뿐만 아니라 신용대출이 정착되지 못했기 때문에 모든 금융거래에 적용되어온 金融慣行이기도 함.
 - 일반적으로 대기업집단만 채무보증을 이용하는 것으로 인식하나 채무보증은 금융기관의 요구에 따라 대기업, 중소기업, 가계대출까지 적용되는 金融慣行임.
 - 따라서 채무보증은 信用貸出 관행이 정착되고 금융권에서 보증을 요구하는 관행이 사라지지 않는 한 완전히 철폐하기는 어려울 것임.
- 채무보증(loan guarantee)과 같은 사적 관행을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선진국에서도 다양한 보증시스템이 발달해 있음.
 - 선진국에서도 모기업이 계열기업의 신용을 보완해 주는 다양한 보증장치가 활용됨.
 - 기업분할과 정리에 장애가 된다고 해서 사적 관행으로 형성된 채무보증을 획일적으로 제한하면 기업신용에 대한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임.
 - 계열사간(intra-group)의 채무보증을 금지하면 다른 그룹간(inter-group)의 보증까지 법으로 규제할 수 있을지 의문임.
- 공정거래법에 의한 30대 기업집단만 채무보증을 규제하여 규제자체가 차별적임.
 - 10대그룹의 채무보증 비율은 34.0%, 11-20대 그룹은 70.4%, 21-30대 그룹은 150.5%로 그룹규모가 적을수록 채무보증의 비율이 높아짐.

<표 5> 기업집단별 채무보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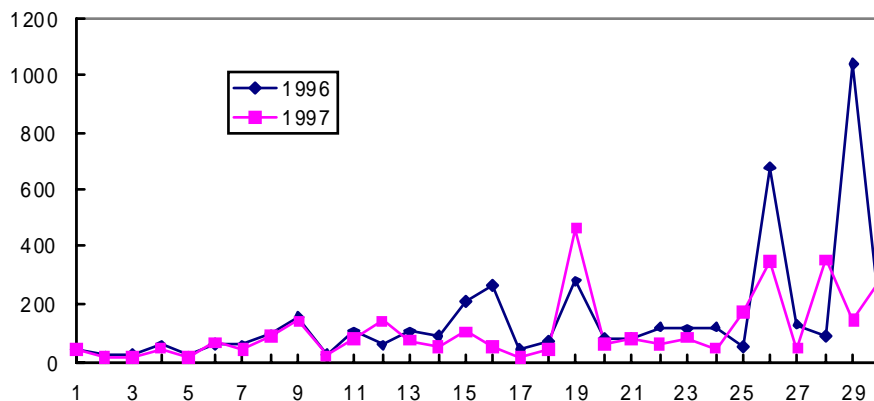
(단위: 조원, %)

구분	자기자본 (A)	채무보증금액			자기자본대비비율		
		제한(B)	제외(C)	계(D)	B/A	C/A	D/A
1-10대	56.3	19.1	22.9	42.0	34.0	40.7	74.7
11-20대	9.2	6.4	7.1	13.6	70.4	77.9	148.3
21-30대	5.0	7.6	1.2	8.7	150.5	23.7	174.1

자료 : 공정위, 97. 4

- 기업집단 순위가 하위로 갈수록 채무보증에 의존하는 비율이 더 높은 것이 현실임.
- '97년 4월에 신규 지정된 기업집단들의 평균 채무보증 비율이 288.0%로 기존 기업집단의 평균 47.0%를 크게 웃돌고 있음.

<그림 2> 기업집단별 채무보증비율



(2) 채무보증 감축에 따른 영향

- '99년까지 보증을 해소토록 한다면 기업들은 동일한 규모의 차입금을 상환할 수밖에 없음.
- 금융위기가 없었던 상황에서도 채무보증을 신용대출로 전환한 비율은 미미한 실정(21%)이며, 보증해소는 여신을 직접 회수하거나 (51.0%), 입보대체(11.0%) 등을 통해 달성되었음.

<표 6> 채무보증의 해소방법

(단위: %)

	여신상환	신용전환	입보대체	중복·과다 보증 축소	합병 및 증자
1996.4.1	41.6	-	25.5	23.2	9.7
1997.4.1	51.0	21.0	11.0	7.0	10.0

자료: 공정위, 『대규모기업집단 채무보증현황』, 각년도

- 현재의 채무보증 규모를 상환하기 위한 자금확보 경쟁으로 자금난을 더욱 가속화시킬 것임.
 - 33조 1천억원 규모의 채무보증 해소가 야기할 대출금 회수는 한계상황에 처한 기업의 자금난을 크게 악화시킬 것임.
 - 이 금액은 30대 기업집단 총부채의 12.6%, 단기차입성격인 유동부채의 21.0%를 차지함.
 - 만약 적용 제외되던 채무보증까지 전부 규제한다면 보증해소규모는 64조 4천억원에 달해 이는 총부채의 24.4%, 유동부채의 40.7%에 해당하는 규모임.

<표 7> 30대 기업집단의 부채현황

(단위: 10억원, %)

구 분	유동부채	고정부채	부채총계
5대	86,512	63,026	149,538
6-10대	31,544	18,712	50,256
11-30대	40,121	24,248	64,369
30대 전체	158,177	105,986	264,163

자료: 『97한국의 기업집단』, 자유기업센터

- 통상적으로 계열사 채무보증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보증기관 이용, 다른 담보나 입보대체 등이 있으나 한계가 있으며, 유상증자, 부동산 및 계열사 처분도 매우 어려운 상황임.

- 신용보증기금의 대위변제 급증, 綜金社 업무정지 등으로 會社債의 지급 보증 조차도 사실상 중단상태에 있음.
- '97.12 영업 정지된 9개 종금사의 회사채 지급보증 규모는 1조 37억원임.
- 大株主의 주식이나 자산을 담보로 채무보증을 代替하는 방법이 있으나 대주주의 자산이 대부분 주식으로 출자되어 있어 추가적인 출자나 담보 여력이 거의 없음.
- '97년 有償增資 규모가 약 2조 7천억원 정도에 불과해 채무보증 해소규모에 비해 미미한 형편임.
- 최근 수익성 악화 등 배당요건 미비로 유상증자 여건도 악화되어 주식 시장을 통한 신규 자금조달도 매우 어려운 형편임.

<표 8> 유상증자 현황

(단위: 10억원)

연 도	1995년	1996년	1997년
발행물량	5,594.1	3,651.5	2,699.2

자료: 상장사협의회

- 자금난 때문에 모기업으로부터 직접 출자나 용자를 받는 것도 쉽지 않을 것임.
- 금융위기로 인한 자산디플레이현상 등 부동산이 장기침체 국면에 있고, 부동산 매수여력이 있는 기업이 많지 않아 정상적인 부동산 처분을 통한 자금확보도 어려운 실정임.

- 기업합병 및 분할, 자산의 처분 등 계열사정리 등에 따르는 비용이 너무 높아 계열사처분도 쉽지 않음.

- 기업매각 및 인수에 조세부담이 과중하고, 절차가 복잡하며, 정리해고가 어려운 등 이른바 구조조정에 따른 去來費用이 너무 높은 실정임.

5. 채무보증 규제의 바람직한 방향

(1) 채무보증 규제방법의 전환

- 公正去來法에서 채무보증을 규제하기보다는 金融監督規程을 개정하여 채무보증에 의한 대출을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
 -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지정제도로 채무보증을 규제하는 방식보다 금융기관의 여신건전성 감독차원에서 채무보증을 규제하는 것이 필요
 - 30대 기업집단 소속기업에게만 채무보증을 규제할 것이 아니라 채무보증 규제를 기업단위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함.
 - 현행 공정거래법처럼 30대 기업집단에만 채무보증을 규제한다면 2000년 이후 채무보증을 금지당하는 그룹(30대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非30대 그룹)과의 규제형평성 문제가 지금보다 더 악화됨.
 - 즉, 非30대 기업집단은 채무보증에 제한이 없는 반면 30대 그룹은 100%까지 채무보증이 가능하지만 2000년 이후 채무보증이 전면 금지되면 규제의 차별이 더욱 확대됨.

(2) 신용대출 정착을 위한 금융감독의 강화

- 채무보증은 금융관행인 만큼 금융기관이 보증이나 담보대신 신용대출을 하도록 여신감독을 강화
 - 현재 金融機關與信運用規程(1조 5항)에는 동업자 상호보증을 이용하여 불건전한 여신이나 투자를 방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금융기관이 대출금에 비해 과도한 채무보증, 포괄보증을 요구하거나, 물적담보 이외에 지급보증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금융감독을 강화해야 함.
 - 금융기관 채무보증의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고 감독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 규정을 개정

(3) 재무구조에 따른 보증한도의 차등화

- 여신 건전성을 감독하는 차원에서 기업의 재무비율에 따라 기업별로 채무보증한도를 차별화하는 것이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방식보다 바람직
 - 예를 들어 負債比率, 自己資本比率 등 재무구조의 건전성비율을 기준으로 기업에 따라 債務保證할 수 있는 한도를 差等化하여 적용하는 방안도 바람직함.

(4) 채무보증에 대한 투명성 제고

- 상호채무보증은 경영투명성 조치와 병행하여 실시
 - 상호채무보증을 하는 경우 신속하게 공시하도록 하고, 신규로 도입되는 결합재무제표에 충분히 반영하도록 조치
 - 채무보증에 대한 주총 결의 요건을 강화하여 투자자나 소액주주들의 피해를 줄이는 방안을 강구
 - 上場法人管理規程에 채무보증총액이 자기자본의 30%가 넘을 경우 주총에서 결의토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이를 하향조정(가령 20%)하는 방안도 검토

(5) 보증 미해소에 대한 과징금 부과

- 정부가 일정기한내에 채무보증비율을 법정한도까지 낮추지 못할 경우 3%~5%의 罰則性 金利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충분한 검토가 필요함.
 - 채무보증규제를 특정기업집단에만 시행하고 있는데 이들에게 다시 벌칙성 금리까지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임.

- 未해소 채무보증을 가진 금융기관은 기업들로부터 별척성 금리를 추가로 받는 인센티브가 생기며, 따라서 채무보증의 신용전환을 더 기피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음.
- 별척금리 방식보다는 금융기관들이 신용대출로 전환하는 대신, 무담보에 따른 위험프리미엄(risk premium)을 가산금리로 부과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효율적임.
- 법정 수준까지 해소하지 못한 미해소 보증분에 대해서는 현행 공정거래법의 과징금(미해소분의 10%까지 부과 가능)을 활용하여 제재

(6) 非차입성 보증은 현행대로 유지

- 현행제도에서 채무보증제한에서 제외되고 있는 보증은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
- 제외대상 보증은 대개 산업합리화 관련 여신이나, 수출관련 보증이 대부분이므로 이 보증까지 해소한다면 오히려 부실기업정리나 수출촉진에도 저해요인이 될 것임.

6. 보증해소를 위한 관련제도 보완

- 채무보증은 궁극적으로 줄여나가되 기업들이 차입을 해소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보증전환을 할 수 있도록 多樣한 構造調整 수단을 마련해야 함.
- 한시적으로 채무보증을 신용전환으로 대체해 주고, 금융기관과 기업간 「재무구조 개선협약」을 마련하여 시행토록 유도
 - 특히 보증계열사와 피보증계열사를 합병하는 경우 보증사의 신용공여 능력을 감안하여 가급적 기존여신을 신용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금융권에 협조 요청
 - 신용대출 기업이 재무비율을 건전화하도록 기업과 은행간 별도의 협약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대출금을 회수
- 금융기관의 주식소유한도를 확대하여 부채의 주식전환(debt-equity swap) 활성화되도록 은행법을 개정
 - 현행 은행법에서는 은행의 유가증권 매입·보유한도를 자기자본의 100%(22조), 타회사주식 발행주식의 매입·보유한도를 자기자본의 10%로 제한(27조)
 - 자회사의 합병(M&A), 정리시에 자회사의 채무를 모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은행법 개정을 통해 은행의 주식보유한도를 확대 필요
- 부동산 처분 활성화를 통한 채무보증 해소
 - 계열사 통폐합, 재무구조 개선 등 구조조정에 도움이 되도록 부동산 처분을 활성화함.

- 성업공사의 부동산 인수를 확대하고, 재원부족시 채권을 발행케하여 이를 담보로 기업들의 채무보증을 해소하는 방안을 검토
- 기업간 인수합병(M&A), 기업분할, 계열사정리(divesture), 자산 및 영업의 양수도 등을 원활히 하기 위해 「구조조정 특별법」을 조속히 시행
 - 주력업종 중심의 전문화,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서 인수합병, 계열사처분, 차입해소에 대한 인센티브를 획기적으로 높여주는 방안이 선행되어야 함.
 - 「구조조정 특별법」을 조속히 시행하여 계열사처분, 인수합병, 부동산 처분에 따르는 각종 조세를 감면하고 절차도 간소화할 필요가 있음.

종합토론

사 회 : 좌승희(한국경제연구원 원장)

토론자 : 강병호(한양대학교 교수)

박우규(SK경제연구소 부소장)

배병휴(매일경제신문 전무)

이동호(안건회계법인 심리실장)

조학국(공정거래위원회 독점국장)

최운열(한국증권연구원 원장)

(가나다順)

좌승희 원장 : 발표를 들어보니 이 주제들이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여서 미궁으로 빠져드는 것 같다. 최운열 원장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운열 원장 : 오늘 발표하신 두 분의 말씀을 들어보면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결합재무제표라든지 상호지급보증의 축소, 금지는 국제관례에 없는게 아닌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한국형 재벌이라는 것이 국제사회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형 재벌에 대한 국제관행을 찾는다면 비판을 받을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결합재무제표의 필요성은 누구나 인정하셨고, 최대표께서도 비슷한 견해를 밝혔다. 외감법이 금년 1월 8일 개정되고 2000년부터 적용되는데, 현재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이를 1년정도 앞당기려는 것이다. 제가 느끼기에는 2월 국회에서 다시 외감법논의가 있을 것이고 법적 뒷받침만 갖춰진다면 빨리 시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발표하신 것처럼 결합재무제표의 작성주체는 어느 것이 선도기업(leading company)인지 분명하지 않으므로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상회사의 범위도 최대표께서 해외계열사를 지금 당장 포함시키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므로 점진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은 국제화되었으므로 해외사업도 국내사업 못지 않으므로 가능하면 예외조항을 두지않고 모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작성의무 기업의 범위도 30대 기업집단에만 국한시키지 말고 그 범위도 확대시켜 투자자가 기업을 신뢰감있게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또 작성절차의 경우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또 제출시한은 연결재무제표작성시 4개월 정도였으므로, 결합재무제표는 5개 월정도로 할 것을 제안하셨다. 저의 생각으로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한다면 연결재무제표를 따로 만들 필요가 없으므로 4개월 정도가 바람직 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상호지급보증에 대하여도, 발표자께서 공정거래법에서 재벌규제의 일환으로 상호지급보증을 규제한다고 말씀하셨지만,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라고 본다. 오늘날 우리 경제가 어려운 원인은 많이 있지만, 외형위주의 성장전략이 큰 원인이 있다. 이러한 외형위주의 성장이 가능한 했던 것은 상호지급보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보다 쉽게 보증하고 보다 쉽게 차입하여, 수익성이 없는 사업에 진출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 대상도 30대니 50대니 하여 구분하지 말고 다시는 수익성을 고려하지 않고 외형위주의 성장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의 지급보증의 규모가 31조, 예외조항까지 합하면 64조나 되는데, 이 상호지급보증을 해소하기 위해 차입을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죽는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 20%이상의 금리를 내고 견딜 기업이 있는가, 30조를 조달해서 기업에 투입하는 것은 자살행위이다. 상호지급보증도 해소하고 차입금도 줄이기 위해서 강도높은 자구행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어제 몇 개 그룹이 자구행위내용을 발표했다. 이 그룹은 자동차와 건설을 주력업종으로 하겠다고 하였다. 만약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그 이외의 업종은 비주력업종으로 하여 비록 수익성이 나더라도 과감히 포기하겠다는 것이 실질적인 자구행위이지, 팔리지도 않고 수익성도 없는 사업을 처분하는 것을 누가 자구행위라고 하겠는가. 수익이 나지만 과감히 정리하고 거기서 나오는 돈으로 상호지급보증도 해소하고 부채규모도 줄이는 것이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자세가 아닌가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구조조정시에 기업들이 하는 얘기가 팔려고 해도 팔리지 않는다고 하는데 괜찮은 것을 내놓아야 팔리지 않겠는가. 예를 들면 일찌기 어려움에 직면했던 두산그룹은 수익성이 높은 3M이라는 회사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회사는 잘 팔렸다. 두산은 이 기업을 매각해서 어려움을 극복하였는데, 그 결과 오늘날 다른 기업보다 잘 견디지 않는가 생각한다. 한 가지 어려움이 있다면 세제측면인 것 같다. 구조조정을 위해 세제상의 문제나 고용조정의 문제는 2월 임시국회에서 어떤 제도적 뒷받침이 있으리라 생각한다. 그리고 성업공사같은 곳에서 기업이 구조조정을 위해 내놓은 부동산을 전량 매입하는 것이 기업의 지급보증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리고 은행들이 부채의 주식전환(debt-equity swap)을 통해 상호지급보증 문제나 부채비율을 줄이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은행들이 보기에 뭔가 괜찮다는 생각이 없으면 이것도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것도 상호보완적으로 같이 논의되어야 한다. 지급보증 해소안도 한꺼번에 해소 하는 것은 혼란을 초란을 초래하므로 신규지급보증은 앞으로 금지시키고 기존의 지급보증은 시차를 두고 천천히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호지급보증을 해소하는 방법의 하나로 기업의 상호지급보증을 오너의 입보형태로 대체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은행들은 대출심사기능이 없으므로 보증을 요구하고, 기업들은 부동산을 사서 담보를 서게된다. 은행이 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은행들이 대출관행을 개선하여 EVA(경제적 부가가치)같은 자기 평가기준을 잘 활용한다면 많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좌승희 원장 : 최 원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한국형 재벌이라서 한국형 재무제표도 필요하고 한국형 지급보증 해소도 필요하다는 요지의 말씀인 것 같다. 그러나 논평하신 내용은 발표자와 큰 차이가 있지는 않은 것 같다.

강병호 교수 : 우선 결합재무제표는 IMF요구에 따라 가급적 빨리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 상호지급보증의 경우 해소라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축소가 있을 뿐이다. 세계에서 다 있는 제도를 우리나라만 없애겠다는 것은 너무 정치적인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IMF가 요구하는 것은 기업경영의 투명성이다. 결합재무제표를 요구하는 것도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보이라는 것이고, 상호지급보증을 보자는 것도 지급보증이 있다는 것을 보자는 것이지 이를 없애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왜 우리는 결합재무제표를 도입해야 하는가. 이는 우리의 기업구조가 세계에서 특이하기 때문이다. 외국의 경우 지주회사가 있다. 이 제도가 왜 필요한가. 이는 적은 돈으로 많은 기업을 지배하기 때문이다. 왜 적은 돈으로 많은 기업을 지배하는가. 이는 규모와 범위의 경제를 추구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지주회사의 경우, 계열기업간에 거래의 투명성과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주회사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이 제도의 본질이다. 그런데 우리는 왜 개인기업이 사주의 돈으로 기업을 형성할 수 밖에 없었는가. 이는 우리나라만 지주회사를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본의 경우도 이번에 3000억엔 이하의 경우는 지주회사를 허용해주고, 3000억엔이상의 경우도 과도한 경제력집중이 우려되지 않는 한 지주회사를 허용한다고 한다. 지주회사가 도입되면 결합재무제표가 필요없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주회사를 도입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필요하다. 미국의 ARS 51에도 그렇게 표현되고 있다. 기업간의 지배관계에 의해 나타낼 수 없는 개인의 지배관계로 연결된 것을 나타낼 경우, 결합재무제표작성도 하나의 방법이다. 우리는 순서가 바뀌었다. 우선 지주회사를 도입하여 기업이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고, 개인의 출자를 지주회사를 통해 출자할 수 있도록 해주고 이런 이야기를 해야 한다.

그리고 상호채무보증은 원인과 결과를 잘못 알고 있다. 돈이 필요하여 채무보증을 해주는 것인가 채무보증이 필요하니까 돈을 빌려주는 것인가. 돈이 필요하

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채무보증을 없애라고 하는데 그룹경영의 장점이 무엇인가, 지주회사의 명성을 이용해서 자금을 쉽고 싸게 조달할 수 있기 때문에 채무보증이 필요한 것이다. 이 제도를 없애겠다는 것은 자본주의 제도에 대한 어떤 문제제기이다.

지급보증제도의 문제도 시장에 맡기면 된다. 만약 어떤 기업이 과다차입을 한다면 이 내용이 공시되도록 하여 투자자들이 그 기업에 투자하지 않고 주식매입하지 않도록 하면 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시장제도로 가는 것이 채무보증을 줄이는 것이지, 원인을 치료하지 않고 증상만 치료한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다. 그리고 앞으로 대출은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을 통해서 해야 한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모기업이 보증을 해줘야 대출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것마저 없앤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제도를 고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관행이 바뀌어야 한다.

시장경제에 맡겼으면 시장원리에 따라야 한다. 그러면 시장원리를 따른다고 할 때 폐해의 원인을 규제해야 하는가 행위를 규제해야 하는가. 원인을 규제하는 것은 과거의 개입주의자의 사고방식이다. 행위를 규제하는 것은 시장에서 잘못된 폐해가 나왔을 때에 그 시장의 폐해를 줄이는 것이 시장주의자의 관점이다. 상호 지급보증이 많아서 기업의 부채가 많다고 상호지급보증을 없애고, 재벌이 문제가 많으니까 재벌을 해체한다면 우리나라 기업은 세계기업의 하청업체가 될 수도 있다. 그러면 성장의 잠재성까지 모두 없어지게 된다.

규제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규제자가 바뀌어야 한다. 공무원사회가 과거 고시출신자들로 채워져서는 안된다. 시장사정에 밝은 사람이 규제해야 한다. 규제개혁위원회를 민간주도로 해야 한다. 이제는 규모에 따른 차별규제는 없애야 한다. 규모가 커서 독과점을 형성한다면 진입장벽을 없애 국내기업이든 외국기업이든 기업들이 진입을 하도록 허용해야지 이들에게 업종전문화하라고 한다면 이것은 다시 진입장벽을 형성하는 것이 된다. 기업은 이윤이 나는 곳으로는 뛰어 들어야 한다.

그리고 소유와 경영의 분리 논의는 50년대에 생긴 말이다. 소유자든 경영자든 경영만 잘하면 그만이다. 경영자의 경우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다. 그 결과 사외이사제나 기타의 제도를 도입해도 이를 해결하기가 어렵다. 오히려 소유자가 경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좌승희 원장 : 강교수님께서 상당히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첨언할 내용이 없는 것 같다. 자유토론 기회가 있으면 좀더 많은 토론의 기회가 있기를 바란다.

박우규 부소장 : 지금 두 가지 이슈가 같이 가야한다. IMF가 하자고 해서 한다면 시행착오가 발생한다. 결합재무제표의 경우 세계에서 해본 곳도 없다고 하니 기준을 잘 만들어야 한다. 먼저 기업경영 투명성을 본다면, 기업의 투명성이 있다고 부도가 안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한보의 경우 재무제표를 단순합산해보니 곧 부도가 날 것 같았다. 한보가 투명성이 높은 회사는 아니었다. 중요한 것은 그 기업의 부채비율이 높은지 여부이지 투명성이 목표가 아니다. 문제는 기업이 경쟁력이있게 잘 하고 금융계에 혼란이 오지 않게 하는 것이다. 도요타의 경우 전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회사인데 작년 8월에야 세계기준에 맞춰 회계 기준을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하여 자본조달을 하려면 기업의 투명성을 높여야만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IMF가 요구하니까 한다고 한다. 투명성을 높인다고 한보가 부도가 나지 않는 것도 아니고, 투명성을 높인다고 한보가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재무제표를 바꾸는 것과 같은 중대한 것을 할 경우 이의 목표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한다. 이는 지주회사제도가 실시되는 것과 병행하여 논의되어야 할 이야기이다.

최운열교수님은 개인 소유주가 보증을 하면 되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셨는데 역으로 하면 지급보증이 없다면 기업에서 대출을 하지 못한다. 우리나라가 신용사회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는 신용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담보가 필요한 것이지 기업이 부도덕 하고 개인이 부도덕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를 일거에 해소하겠다는 것은 IMF에서 요구하는 지는 몰라도 힘들다. 이를 위해서는 최소한 몇 가지가 먼저 해결되어야 한다. 우선 지급보증을 해소하라는 얘기는 회사를 정리하라는 것인데 이는 실업을 감당하기 어렵다. 지금 지급보증을 급격히 축소하라고 하는 것은 국내기업을 해외에 다 팔아 넘기라는 이야기이다. 한국 기업은 지금 국내에서 차입이 안되고 담보도 안되고 증자도 안된다. 5대그룹은 1년에 유상증자 한도가 5,000억원이고, 10대그룹은 이번에 없어졌지만 지금까지 유상증자 한도도 있었다. 그리고 오너가 지급보증해야 한다면, 어느 누가 지급보증을 하겠는가. 중소기업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이다. 회사를 그만두지 무한지급보증을 할 이

유가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지금의 경제상황에서는 국내에서는 자본조달의 길이 없다. 해외에서도 자금조달의 길이 막혀 있다. 왜냐하면 국내의 경우 금리가 LIBOR + 5~6%이고 이 경우 개인기업은 이 보다 최소한 더 높은 금리를 줘야한다. 그럴 경우 1년만 가면 빛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 이를 버틸 기업이 없다. 자본조달의 길이 완전히 막혀있는데 지급보증을 해소하려면 기업을 무조건 팔아넘기라는 이야기이다.

그런데도 무조건 지급보증을 당장 해소하라는 것은 무리다. 물론 5대 기업내의 1-2개는 그럴 수 있다. 10대그룹, 30대그룹으로 가면 해소방안이 없다. 사실은 IMF가 하루아침에 온 것이 아니고 30년이상 고성장-저실업에서 쌓여온 것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해소하는 것은 무리다. 서서히 시차를 두고 해나가야 하는데, 상호 지급보증을 하루 아침에 해소하라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신용사회가 정착되어야 하고, 두 번째로 지금 당장에 할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성장이 회복된 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유상증자가 어려운 이 시기에 부채를 해소하는 것은 기업을 팔아서 넘기는 수밖에 없다. 수출도 수익성이 나야 수출하고 내수도 누가 사줘야 팔리는 것인데 이는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 일이다.

그리고 우리 신뢰도가 회복되고 국제금리가 하락해야 된다. 국제금리는 올해는 떨어질 것 같지만 우리 기업이 빌리는 자금은 +5%정도 되기 때문에 해외자금 조달에는 시간이 걸린다. 환리스크가 없어져야 기업이 해외자금조달을 할 수 있다. 구조조정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 정리하고, 한계기업정리나 M&A를 지원할 수 있는 지원책과 같은 여러 가지 제도가 잘 되어야 한다. 이는 기본적으로 신용사회가 되어야 하지 법으로 할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적대적 M&A 규제도 풀고, 지급보증 금지하는 식으로 하면 잘 나가는 회사를 팔아 빛 갚고, 수익성없는 기업만 안고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외채를 갚고 되살아 나겠는가, 이러한 심각한 현실을 풀어갈 수 있겠는가. 오늘 인도네시아의 경우 환율이 10000루피아를 넘어섰다. 이럴 경우 아시아전체로 위기가 확대될 수 있는데, 이를 막기 위해 국내기업을 보호해야 하는데, 국내기업부채를 못갚으면 이것이 실업이 된다. 이 경우 우리나라는 후진국이 된다.

멕시코와 아르헨티나를 보자. 멕시코의 경우 잘 나간다 하지만 아직도 벌어서 빛 갚는데 쓰기 바쁘다. 이 상태로 나가면 몇 년내에 멕시코에 외환위기가 또 온다. 그러므로 경제정책시에 매우 방어적이어야 한다. 모든 제도의 기준을 잘 만들고, 정책도 잘 해야지 원칙으로만 밀어붙인다면 살아남기 어렵다. 30대기업, 50대

기업하지만 기업을 살려야 외채도 갚고 실업 확대도 막을 수 있다.

좌승희 원장 : 박우규 박사님은 정책자문을 상당히 오래 하셨던 분인데 이번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배병휴 전무 : 결합재무제표, 상호지급보증은 경제논리보다는 시대적인 과제이다. 시대상황도 중요한 경영환경이다. 지금 국민들은 IMF시대에 이르게된 책임이 경제관료와 대기업에 있다고 지목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국민이 지목을 한다는 것은 중요한 경영환경이다. 이런 경영환경을 돌파한다는 차원에서 결합재무제표가 불가피하다고 하지않을 수 없다. 국제경영환경에서도 이런 예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없더라도 무리를 해서 만들어야 하는 게 우리의 시대적 과제다. 그러면서 우리 기업들이 살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하지 않는가 생각한다. 필요성에 대하여서는 시비를 더 이상 가릴 필요없다.

그러면 결합재무제표를 도입하고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IMF체제를 단기간에 벗어나서 국제경쟁력을 회복하고 우리 경제의 성장력을 뒷받침해 주겠느냐를 찾아보아야 한다. 이는 논리가 아닌 논리이전의 현실과 시대상황으로 국민이 모두 원하고 있다. 그러나 결합재무제표를 도입하여 대기업이 다 죽는 것은 국민이 원하지 않으므로 이에 맞춰서 도입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 외감법에 따르면 2000년 사업년도부터 시작하고 2001년에 공시하자면 1999년 사업년도부터 준비해야 한다. 만약 이를 중요하다고 도입시기를 앞당긴다면 1998년 상반기부터 준비해야 한다. 이는 현실적으로 무리다. 2001년 부터 공시하는 것도 벅찬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외감법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으니, 그대로 따라가는 것으로도 충분하지 않은가 생각한다.

작성의무집단도 아마 쟁점이 되는 것 같은데 이는 발제자를 그대로 따르려고 한다. 계열기업이 많은 것은 방만한 경영, 차입경영의 원인이 될 수 있고, 선단식 그룹의 성장자원을 잠식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의 수와 자산총액 모두를 고려해야 한다. 작성주체도 문제가 되는 것 같다. 발표자께서는 최상위 지배회사, 최대회사, 그룹본부 소속회사 등 여러 가지 왔다갔다 하면서 그룹내의 최대회사로 강제 규정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다라고 하였는데 최대 지배주주가 머무는 곳이 작성주체가 되어야 하지 않는가라고 생각한다. 대상범위도 그렇다. 해외계열회사를 강제도입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고 들었다. 이 경우 원칙만 도입하고 준비기간 2-3

년 유예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를 유예한다고 결합재무제표의 기본정신을 파괴하는 것은 아니다. 기업이 견딜 수 있는 수준의 결합재무제표가 필요하지 기업 죽이는 제도가 필요하겠는가.

채무보증제도도 마찬가지다. 강교수 논리를 따르면 이것도 아주 훌륭한 제도인 것 같은데 당장 없애자고 하시니 그 말씀도 옳으신 것 같다. 그런데 국민들 그리고 경제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채무보증 때문에 상위 대기업이 금융독식을 하고 그룹전체가 부실해진다고 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일방적으로 거부적인 자세로 보아서야 안된다고 생각한다. 기업이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받아들 이면서 기업이 견딜 수 있는 합리적인 수준을 찾아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한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은, 법정 채무보증한도를 초과하는 80여개 회사가 있는데, 여기는 상위회사의 경우는 문제가 크지 않은데 하위가 문제가 된다. 지금 구조조정을 발표하는 회사는 그래도 자신있는 회사이다. 그런데 너무 빨리 단기간에 강제한다면, 정책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룹이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금융관행은 고치지 않고 재벌에게 강제하는 것은 무리다.

그리고 규제방법도 30대 그룹만 적용하면 하위그룹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으니 이를 재벌정책이 아닌 금융감독규정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얘기는 논리적으로는 맞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는 시대성에 역행하는 논리로 비춰지기 쉽다. 최근에 현대, 엘지 그룹의 구조조정에 대해서도 반론이 있다. 재벌들의 사재 환원에 대해서도 아직 불충분하다는 논리를 편다. 그러므로 좋은 싫든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고 신용대출관행을 먼저 확립하라는 것도 논리적으로 맞다. 그러나 금융쪽과 대기업의 방만한 경영을 현재 위기의 원인으로 지목하니까 거기에 응답해 주는 것이 지금은 필요하다.

보증한도 차등화 필요할 것 같고 채무보증의 투명성 대단히 필요할 것 같고, 보증한도 미해소분에 대한 벌칙성 금리부과는 무리가 아닐까 생각한다. 비차입성 보증, 이것은 과거가 있는 보증 아닌가. 과거 우리 정부 정책이나 국민들이 모두 불가피하다고 수용했던 부분이다. 산업합리화라든가 수출촉진등을 한꺼번에 해소하는 것은 무리이다. 결국은 제도보완에서 큰 길을 찾으려면 구조조정 특별법은 빨리 시행해야 할 것이다.

금융기관의 주식소유한도도 대폭 확대해 주고 부채의 주식전환, 이는 대단히 시급하다. 그리고 부동산시장을 활성화 시키는 정책도 필요하다. 그런데 결국 이 제도를 시행하더라도 기업을 시장에 내놓으면 외국기업이 다 구매할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도 있는데, 걱정도 해야 하지만 부분적으로는 그렇게 해야 할 필요도 있다. 결국 달러가 거기서 나와야 하는데 집안의 장롱의 금이나 달러를 다 긁어내도 모자라니까 부분적으로는 외국기업이 국내기업을 인수하면서 돈 좀 풀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좌승희 원장 :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상황이 상황이니 만큼 필요한 만큼은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토론자의 요지인 것 같다.

이동호 실장 : 발표자와 토론자 분들이 모두 자신을 방어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다. 본인은 회계사의 입장에서 결합재무제표의 실무적인 사항에 대해서 얘기하겠다. 결합재무제표의 도입은 국제적 선례가 없는 것으로 조금 독특한 것이다. 지분율의 지배구조가 아닌 기타의 방법, 특히 상호보증 등으로 하나의 회사가 잘못될 때 이와 자본구조가 전혀 상관없는 다른 회사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결합재무제표의 도입이 논의되었다.

또한 IMF의 투명성 요구나 외국에 나가서 돈을 빌리고 빌려줘야 하는 현 시대적인 입장을 고려해서 결합재무제표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있다. 그러나 만일 상호지급보증이 사라진다면 결합재무제표의 필요성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만일 기업간의 구조가 지분율이 아닌 지주회사구조가 된다면 연결재무제표로 모든 회계자료가 공시되고 재무제표가 작성될 것이다. 만일 1999년까지 우리가 상호지보를 모두 해소한다는 목표를 달성한다면 결합재무제표는 의미가 없을 것이다. 개인적으로 기업지분율에 관심이 있는 사람 외에 이것이 실질적으로 쓰이는 데는 없을 것이고 어떤 두 기업이 서로 완전히 독립되어 경영되고 있다면 이 두 회사의 재무제표를 결합하여 분석할 이유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호지보가 해소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는 결합재무제표의 필요성이나 유효성을 인정한다. 그래서 이 결합재무제표를 기업의 상호의존구조가 현재대로 진행되는 동안만의 한시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싶다.

이를 전제로 하여 결합재무제표 도입시의 주체, 범위, 도입시기 등에 대해 몇 가지 언급하겠다. 우선 한 기업집단의 결합재무제표에 포함되는 대상에 대해서 크게 금융업과 비금융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금융업 중에서 은행이나 보험업같이 특성이 확실하고 특정한 규제를 받는 기업은 오히려 결합재무제표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더 좋다고 본다. 다만 실질적인 지분관계가 존재하여 그 영업결과

가 배당이나 이익규모에 영향을 미친다면 우리가 말하는 소위 ‘지분법’에 의한 지분에 의해 회계처리를 하고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총체적인 자산규모, 여신규모, 수익, 순이익 등은 주식으로 표시하고 결합재무제표에는 순수한 지분만을 표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다음으로 해외자회사에의 현실적인 적용에 무리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약간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 상호지급보증에 의한 국내계열사와는 달리 해외자회사는 자본의 지배구조가 거의 100%가까이 지분을 통해 설립되고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연결재무제표의 기준에 의해서도 포함된다. 그렇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도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본다. 다만 현재 연결재무제표는 지분율을 기준으로 하므로 그 대상이 많아야 3-4개내지 10개 내외 정도가 되지만 결합재무제표로 하나의 기업집단을 모두 하면 60개, 또는 40개에서 50개 정도가 되는데 이것을 한꺼번에 처리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은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현 연결재무제표를 전산처리하고 있다면 숫자가 늘어나는 것은 저산처리에서 그다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별 무리가 없다고 본다. 이와 같이 특별하게 다른 사항이 없는 한 해외자회사에 대해서도 시기적인 유예는 불필요하고 오히려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는 이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된다고 본다.

다음은 도입시기와 관련된 문제이다. 결합재무제표의 작성절차는 현재 연결재무제표 작성절차와 기본적으로 다를 바가 없다. 단지 주체가 연결재무제표는 자본을 위주로 한 상호관계중심이고 결합재무제표는 경영지배관계중심이라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은 점으로 볼 때 대상 개수가 많아진다는 양적인 문제가 있다해도 도입시기와는 관계없다고 본다. 오히려 기업투명성문제를 고려한다면 결합재무제표의 도입은 할 수만 있다면 바로 도입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본다. 본인은 기업실무에 대해서는 자세히 언급할 수 없지만 단순히 회계처리를 하고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실무적인 면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연결재무제표와 결합재무제표 그리고 개별재무제표까지 나름대로의 필요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세 개가 모두 작성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누가 작성하는가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면, 개별적으로 누가 작성해야 한다는 생각은 없지만 궁극적인 채권자가 금융기관이므로 금융감독원에서 통제나 자료가 필요한 선에서 회계담당기구에 통보하여 작성토록 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이상으로 실무적인 선에서의 발언을 마치겠다.

조학국 국장 : 여러분들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정책을 만들고 제도를 구체화시키는 것이 나의 임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말씀하신 내용들 중에서 우리의 생각과 다른 부분은 얘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여 그런 부분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먼저 결합재무제표의 도입이나 상호지보의 해소가 마치 IMF의 요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해되고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상호지보 해소는 공정거래법에 의해 1993년에 도입되어 5년째 시행되고 있는 것이고 결합재무제표의 도입안도 IMF의 자금지원이 있기 전에 이미 국회에 상정된 것이다. 다만 여러가지 이유로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가 이번 IMF를 계기로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되어 도입이 된 것이다.

또 하나는 왜 공정거래법으로 재벌정책을 하느냐.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 결국은 정부의 제도가 잘못되어서 생긴 문제가 아니냐라는 생각들인데 기본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 취지는 이해한다. 금융이 제대로 안되어 파생된 문제가 아니냐. 결국은 시장이 해결하도록 해야하는 것을 정부가 개입해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들은 그야말로 원론적으로 맞는 얘기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잘 생각해보면 앞서 최고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나라와 같은 경제력집중 또는 재벌문제라는 것은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그 원인이 어떻게 되었든 시장에서는 이것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아 보려고 입법화 되었고 공정거래법에 포함된 것이다. 이런 것을 하나의 잣대로만 보지 말고 이것이 이루어지게 된 역사적 과정을 살펴본다면 충분히 이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며칠전 국회에서 열린 경제살리기단체 협의회와 경실련이 주최한 재벌정책의 방향이라는 토론회에 참석했었는데 여기에서는 지주회사나 출자총액제한을 완화하려는 정부정책을 질책하는 정반대의 의견을 들었다. 이와 같이 생각들이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점도 이해해 주기를 바란다.

좀더 구체적인 얘기로 결합재무제표의 도입이 세계에 없는 제도라는 얘기를 하는데 자료에 의하면 사실 유럽에서도 실질지배력을 기준으로 하는 재무제표를 만들고 있다. 용어의 혼동이 있기는 하지만 연결재무제표를 실질지배력을 기준으로 해서 만든 것이 곧 결합재무제표라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자꾸 결합재무제표라는 것이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마도 다른 나라에는 우리 나라와 같은 기업집단이 없기 때문인 것 같다. 주제 발표자가 잘 정리하셨듯이

여러 가지 이유로 결합채무제표의 도입이 필요한 것이지 단순히 상호지보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보기 위해서 결합채무제표를 만들자는 것이 아니다.

상호지보만을 보고자 한다면 이를 공시하도록 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결합채무제표를 만들자는 것은 출자관계나 자금대차관계와 같은 기업간의 내부거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알자는 것이다. 다만 상호지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들의 신용대출관행이 정착이 되어야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금융기관들도 기업의 재무상태를 잘 알아야 하기 때문에 결합채무제표의 작성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금융기관의 생각이다.

금융기관들이 기업의 재무적인 실상을 알기가 어렵고 각종 회계서류의 객관성을 판단하기가 어렵다면 신용대출의 관행이 정착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실제로 결합채무제표를 만드는데 있어서 기술적인 어려움은 거의 없고 다만 범위를 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지금 공정거래법에서도 범위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여기에서의 개념은 해외법인과 금융법인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다만 30대 대규모 기업집단을 지정할 때는 그 목적이 상호지보의 해소에 있기 때문에 해외를 제외하고 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본다면 결합채무제표를 작성할 때 금융이나 해외법인도 포함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지만 각주를 단다던가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의 모색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다음은 채무보증 해소문제인데 이것이 외국에도 있는 제도라고는 하지만 외국에 우리처럼 평균적으로 자기자본의 100% 가까이 채무보증을 하는 기업은 없다고 생각한다. 만일 그렇게 한다면 주주나 채권자들의 반발이 엄청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200%, 1000% 채무보증을 하고 있다. 물론 모든 채무보증이 안된다는 것은 아니고 불가피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의 채무보증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여기 발표된 내용 중에서 몇 가지를 언급하면 채무보증을 모든 기업에서 해소하려고 한다면 법이 아니라 금융관행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를 한다. 대기업의 채무보증을 해소하는 것을 공정거래법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경제력집중억제나 대기업정책에서 하는 것이고 모든 기업이 그 대상이 된다면 금융관행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본다. 또 한가지 일정채무비율 일정이상인 기업에 대해서는 채무보증을 차등화 하여 허용해야한다는 것과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받은 자기자본의 20%, 30%의 채무보증은 허용해야한다는 것은 예외의 폭을 확대해야한다는 것인데 자료에 정리된 바와 같이 예외와 예외 되지

않은 것이 거의 같은 규모이다(31조). 지금도 수출관련이나 기술개발과 관련된 자금에는 보증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외를 확대하자는 것은 원래의 취지에 합당하지 않다고 본다.

결론적으로 지난 한해동안 30개 기업집단중에서 8개가 화의나 법정관리에 넘겨진 이유를 생각해 보면 대규모 기업집단의 경우 계열회사 하나가 부실화되면 다같이 법정관리나 화의에 넘겨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채무보증으로 얽혀있어 하나만을 처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기업들의 입장에서 이를 해소하기를 원하고 있지만 이것은 기업혼자의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없고 금융기관이 함께 해야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는 금융기관의 입장에서조차 마찬가지이다.

신규채무보증은 앞으로 하지 않겠다고 해도 기존의 5-10년씩 걸려 있는 채무보증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느냐의 문제가 남아 있다. 그때까지 기업이 구조조정을 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을 수도 없다. 결국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기업 스스로가 가능하면 빨리 채무보증을 해소하여 구조조정을 하는 것이 기본적인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강병호 교수 : 조국장님께서 매우 합리적으로 말씀하셨듯이 무엇이든지 과한 것은 좋지 않다고 본다. 2000년까지 채무보증을 완전히 없앤다는 등의 과한 용어는 자제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지주회사제도를 기업에 보너스 주는 것처럼 생각하느냐의 문제도 이것이 좋은 제도이면 당장 도입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도입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나라가 기업집단을 형성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정부의 규제가 너무 심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선진국에서 얘기하는 지주회사제도를 도입했다면 지주회사 형태의 구조가 생겼을 것인데 이를 규제했기 때문에 이처럼 이상한 구조가 생겼다. 그리고 이러한 제도하에서는 외국에서 얘기하는 연결채무제표라는 것이 의미가 없으므로 이상한 결합채무제표라는 것을 만들 수밖에 없었다. 결국 원론적이고 원초적인 지배구조부터 정상화시키고 이에 상응하는 국제적으로 타당한 회계처리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주회사제도는 봐가면서 하자는 것은 문제다.

대통령 당선자도 공정거래위원회를 공정경쟁위원회로 할 것을 얘기했듯이 자본주의시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유효경쟁이므로 이것을 우선적으로 하다가 불가피하게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때에 정부가 간섭하여 조정하는 것이 옳다. 그러한 분위기, 그러한 경쟁의 장을 만들어 주지 않고 무조건 기업에게만 틀

을 정해놓고 규제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우리의 규제이론을 보면 규제자들이 규제의 실패를 보완하기 위해서 또다른 규제를 만드는 다고 한다. 자본주의 시장 경쟁은 경쟁시장의 원리이며 원칙에 가장 충실하게 나가는 것이 문제를 푸는 첩경이라 생각한다.

좌승희 원장 : 아직 우리는 지주회사가 좋은지, 나쁜지에 대해서도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한 것 같다. 우리나라 대기업이 국가경제에 도움이 되는지, 안되는지 의견의 일치가 안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대기업을 해체해야 국민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재벌들도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으니 잘 나아가도록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상반된 주장을 펴니 이 문제는 끝없는 어려움이 아닌가 싶다.

그러면 크게 문제를 제기한 부분은 없으신 것 같으니 주제발표를 하신 분들께서도 토론에 참여하시는 의미에서 간단히 토론에 답변해 주시기 바란다.

최창순 대표 : 결합재무제표에 관해서는 전반적으로 도입의 필요성은 모두가 인정하는 것 같다. 다만 도입의 방법에 관해서는 아직 정부에서도 결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부분적인 제 개인의 생각을 말한 것이다. 질문중, 해외 자회사도 다 포함을 시켜야 한다는 것이 있었는데, 저의 의견은 자회사를 포함시키지 말고 제외시키자라는 것이 아니라 도입 처음부터 모든 것을 일시에 하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작성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외국에서도 재무제표를 감사받아서 다시 가져와야 하기 때문에 결산일로부터도 기간이 늦어져 정보로서의 가치가 떨어지므로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이었다.

또한 이것을 4개월로 할 것이냐 5개월로 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 점에 있어서도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다라는 의견에는 동의를 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현재 B그룹에서도 16개의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데도 4개월의 시간이 필요한데 70여개를 한 번에 묶으려면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 또한 감사라는 것이 작성하는 것 뿐만 아니라 내부거래가 매우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감사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이재우 박사 : 대부분 옳은 방향의 의견들이신 것 같다. 결국 채무보증의 관행도 대기업의 관행, 금융관행 또는 이 두가지 모두의 관행이다라는 의견이신 것

같다. 개인적으로는 공정거래법에서 규제하는 것보다는 금융권에서 정상적인 금융규제를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아직 공정위의 정확한 입장은 모르겠지만 공정위에서 기업집단을 지정하여 규제하는 것으로는 출자총액 자기자산의 25% 규제, 계열금융기관 의결권 금지 그리고 채무보증을 자기자본의 100%로 규제하고 있다. 결국 M&A시장도 개방이 되고 이제는 출자총액제한도 규제를 거의 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으면 역차별이되기 때문이다.

현재 상호출자나 지주회사 문제도 상당히 전향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사실상 공정거래법의 기업집단정책에 남아있는 채무보증부분은 오히려 더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 그러므로 기업집단지정제도 전체를 재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앞으로 금융감독위원회가 생기게 되면 금융부분에도 구조개혁이 일어날 것이므로 이번 기회에 이 모든 것들이 제자리 찾기를 했으면 한다.

좌승희 원장 : 이제는 방청석의 질문을 받겠습니다. 장시간 기다려주셨는데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자1 : 강교수님께서 규제의 패러다임을 바꾸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두 가지 문제를 해소하는데 있어서 규제의 패러다임을 바꿔 문제를 접근하는 것이 어떠한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래서 우선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한 유인방안이 필요하다. 특히 결합채무제표와 관련하여 외국에서는 이미 연결납세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그것은 세제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기업들은 그만큼의 인센티브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빨리 그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기업들이 이익이 되는데 연결범위를 확대해서 안할 이유가 없다. 최창순 대표께서 외국의 연결납세제도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소개해 주셨으면 한다.

또 한가지는 규제에 있어서도 비용효율적인(cost effective) 방법으로 했으면 한다. 채무보증문제와 관련하여 금융기관을 규제하는 방식이 기업을 규제하는 방식보다는 비용이 덜 들어간다. 우선 금융기관의 대출내규를 우선 고쳐야 한다. 금융기관의 각 은행 대출내규에는 대출시마다 반드시 1인 이상의 보증을 세우게 되어 있다. 이런 규정이 있는데 금융계의 종사자들이 그것을 안 받을 이유가 없는 것이다. 또한 보증을 받지 않는 경우 채무불이행이 되는 것에 대한 면책규정같은 것이 없다. 이런 것들이 함께 개선되어야만 실질적으로 실무자들이 보증을 받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실현가능한 대안으로서 벌칙성금융제도의 많은 문제를 제기하셨지만 문제는 적용대상금융기관을 선정하는 것이다. 각 기업마다 거래은행이 수 십 개씩 되는데 과연 어느 은행의 것을 벌칙금리로 적용할 것인가도 문제이고 또 한 은행을 지정한다 하더라도 대상대출금을 어떤 것으로 할 것인가도 문제이다. 이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도 그런 면에서는 실현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한다.

기업들은 한계상황에 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서는 더 이상 보증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있어 보다 경직적이고 급진적인 축소방안을 신중히 생각할 필요가 있다. 결합채무제표 작성과 관련하여 4개월을 필요로 한다, 더 단축해야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회계사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보는 시각과 기업들이 보는 시각에는 큰 차이가 있다. 우선 기업 입장에서 보면 모든 기업의 전산시스템이 다르고 또는 되어 있지 않은데도 많이 있는데 그런 기업들이 여기에 포함될 때는 처음부터 새롭게 일을 시작해야 된다. 즉 준비기간이 충분히 있어야 한다는 것이 간과되고 있다는 것을 기업들은 많이 지적하고 있다.

현재 증권거래위원회에서는 이미 상당부분을 준비하고 있고 또 특히 해외 현지법인같은 경우에는 지배력 기준보다는 지분율 기준으로 규제를 하려고 한다. 50%이상이 지배력, 지분을 갖고 있는 기업을 중심으로 규제를 하는 것을 案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기업들은 많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예를 들어 어떤 나라에 있어서는 지분율이 50%이상이 넘더라도 실질적으로 외국법인에 대해서 지배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에 있어서는 제외된다는 것을 기업들이 지적하고 있다.

질문자2 : 결합채무제표와 연결채무제표가 왜 필요한 것인가를 간헐적으로 설명하셨는데 이 두 가지가 어떤 의미에서 연결채무제표는 개인투자자에게 유용하고, 결합채무제표는 금융기관이나 또는 정책당국에게 유용한지, 그 유용도의 차이가 어떤 것인지 그 차이를 분명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한다.

최창순 대표 :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지만 일단은 연결채무제표는 그 연결을 하는 대상이 출자지분의 관계가 있었을 때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지배회사와 종속회사가 있을 때 종속회사를 만약 100% 출자하고 있다

면 그 종속회사 이익의 100%가 지배회사로 올 것이다. 그렇게 되면 지배회사의 주주에게는 연결재무제표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재무정보가 된다. 왜냐하면 지배회사의 개별재무제표만 보고서는 그가 투자하고 있는 종속회사의 이익이 얼마나 되는지를 한 눈에 보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즉 지배회사의 주주에게는 직접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다.

결합재무제표는 기본적으로 출자관계에 있어서 수직적인 것이 아니다. 어떤 특정개인이 A, B회사를 가지고 있을 경우, 그 A, B회사가 서로 아무런 출자관계가 없을 때 각각의 이익으로 그 회사는 배당을 하지만 이 두회사 A, B를 출자하고 있는 개인이 각종 의사결정을 마음대로 하여 A회사의 이익을 B로 가져갈 수 있고, B회사의 이익을 A로 가져간다면 이것은 각각 독립된 기업집단이지만 경제적으로는 하나의 단일체인 것이다. 또한 A, B회사가 돈을 빌려 상호보증을 하고 있다면, 즉 A회사에 돈을 빌려준 사람이 100% 지급보증을 B에 했다고 한다면 B가 잘되느냐 못되느냐에 따라서 그 채권자는 중요한 이해관계를 갖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을 묶어 결합재무제표로 작성해서 그 채권자가 상황을 투명하게 알 수 있게 하자는 차이가 있는 것이다.

질문자3 : 먼저 조학국 국장님께 질문을 하고 싶다. 결합재무제표가 국제회계 기준과 부적합하다는 논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고 싶다.

현재 기업은 참 어렵다. 또한 이런 기업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가지는 반응은 기업적인 정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더더욱 기업들의 처신이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그 동안 구조조정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지만 우리나라는 기업분할에 대한 어떠한 규정조차 없다. 그런 규정조차 없는 상황에서 구조조정을 하라고 하는 것은 기업을 팔라는 것으로 밖에는 생각할 수가 없다. 무언가 선진국에 상응하는, 기업분할에 맞는 어떠한 세제감면이나 조치가 선행되고 나서 구조조정을 하라든지, 정리를 하라고 해야 할 것이다. 지금은 증자도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금년에는 회사채발행도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앞으로 3년으로 되어있던 것을 2년안으로 단축해서 조기해소, 조기축소하라는 것은 많은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라 생각된다.

질문자4 : 최창순 대표이사께 질문하겠다. 제가 듣기로 미국같은 경우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모든 기업들에게 어떤 세제상의 혜택이 주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연결납세제도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알고 싶고 만약 우리나라에 도입할 경우 가능성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도입할 경우 문제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 듣고 싶다.

조학국 국장 : 결합재무제표가 국제기준에 적합한 것인지, 국제기준에 맞는지 안맞는지 하는 것은 자료에도 이미 언급이 되어 있다. 외국에서도 실질지배력 기준으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결합재무제표를 도입하는 것도 그러한 것이다. 우리의 연결재무제표는 기업간의 지분관계만을 가지고 판단을 한다. 즉 A회사가 B회사의 30%의 주식을 갖고 있느냐만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데 사실상 우리의 기업들은 그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 A회사, A회사의 동일인이 누가되었든, 그가 몇 %를 가지고 있고 또 그 친족이 몇 %의 지분을 갖고 있는 식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다. 그래서 오너가 4~5%밖에 안되는 지분을 갖고도 계열회사의 평균 47%를 지배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 실질적인 관계를 보자는 것이다. 이것이 국제기준에 안맞을 이유는 하나도 없다고 본다.

현재 분할제도는 상법상 규정이 되어 있지 않다. 분할뿐만 아니라 합병절차도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이번 상법개정시에는 아마 분할제도가 도입될 것이다. 그리고 채무보증을 단기에 해소하려면 일정기간의 유예기간이 필요하며 그 외에 다른 보완조치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중복보증을 요구하도록 되어 있는 은행이나 금융기관의 내규, 소위 책임을 묻는 규정 등 금융기관에서도 여러 가지가 고쳐져야 될 것이며 또한 분할, 합병제도 등도 고쳐져야 한다. 또한 금융기관뿐 아니라 기존의 채무를 해소하려면 기업들도 같이 노력을 해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최창순 대표 : 연결납세제도라고 하는 것은 만약 모회사와 자회사가 100% 출자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나라의 경우 종속회사에서는 손실이 나고 지배회사는 이익이 났다고 한다면 이익난 회사는 세금을 내고 결손이 난 회사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 그러나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만약 100% 지배하고 있는 회사라고 한다면 이것은 경제적으로 하나의 단일체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로 묶어 이익난 것과 손실난 것을 합쳐 0이 되면 세금을 내지 않게 된다. 즉 이러한 것을 연결납세제도라 한다. 미국에서도 이러한 연결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이 제도를 채택할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약 65%~70%로 높아야 한다. 또한 채택한 뒤

에는 그것을 변경할 수 없으며 또한 높은 지분율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우리나라와 같은 결합재무제표로 연결납세제도의 적용은 거의 불가능하다. 지배회사, 종속회사의 이익이 모두 지배회사로 옮겨갈 때 이쪽에서 세금을 많이 내고, 저쪽에서 세금을 덜내고 하는 것이 합산되지만 결합재무제표로 할 때에는 개인주주에 의해서 지배가 되기 때문에 연결납세제도가 적용이 될 수 없다.

좌승희 원장 : 감사합니다. 장시간동안 경청해 주시고 자리를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사회를 본 사람으로서 세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오늘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우선 첫째는 오늘 이 토의가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았지만 오늘 이 논리들이 공론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 토론회를 기회로 좋은 방향을 모색하는 시발이 됐으면 한다. 또 하나는 법과 경제가 다르다는 사실을 정책하시는 분들이나 우리 모두가 인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矯角殺牛의 잘못을 범하면 안되겠다는 것이다. 며칠전 대통령 당선자께서도 국민과의 대화에서 똑같은 말씀을 하셨다. 소뿔을 바로 세우려다가 소를 죽이면 안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다. 오늘 많은 분들의 토의가 우선 기업이 살아야지 경제가 사는게 아니냐는 차원에서 논의가 있었는데 기업까지 죽이지 않는 방향으로 이 문제를 풀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